##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04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위성곤·이기헌·이개호

허 영・박정현・손명수

한병도 • 조인철 • 문진석

김기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양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자에 대해서는 자녀를 얻은 날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1명인"으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둘째"를 "첫째"로, "12개월에 2자녀를"을 "24개월에 1자녀를"로 한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 기간 추가 산입)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 -----「병역법」에 따른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서 삭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가 산입) ① 자녀가-----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에 대해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서는 자녀를 얻은 날에-----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 -----. 이 경우 자 <u>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u>녀를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산입한다. <<u>후단 신설></u> <u>다만,</u>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 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1. 자녀가 <u>2명인</u> 경우 : <u>12개월</u>
- 2. 자녀가 <u>3명</u> 이상인 경우:
  <u>둘째</u>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②·③ (생 략)

정한다.	<다서	사제>
78 Y LT.	\ \ \ \ \ \ \ \ \ \ \ \ \ \ \ \ \ \ \	ニョ ベルノ

1 <u>1명인</u> <u>24개월</u>
2 <u>2</u> 명
<u>첫째</u>
- <u>24개월에 1자녀를</u>
②・③ (현행과 같음)